

의안번호	2208662
의 퇴 인	서삼석 의원
회 답 일	2025. 6. 9.
추계번호	25B128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억 4,000만원(연평균 6,800만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활성화 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및 실태조사(안 제7조)	170	-	-	170	-	340	68

주: 정부의 유사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 추진 방식 및 용역 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 등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정부는 농어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 이 경우 활성화 계획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6조(시·도 계획 및 시·군 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3년마다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음(제1항)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시·도 계획에 따라 3년마다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4	안 제7조(실태조사)	정부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8조(농어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상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6	안 제9조(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어촌 주민,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직화를 지원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7	안 제10조(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함.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업무를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1항)	의무/재량 규정
8	안 제12조(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여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하여 교육, 돌봄, 문화 등 특화된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음(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가 관련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 돌봄, 문화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5조(사회적 농장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사회적 농장 및 사회적 어업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회적 농장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회적 어업공동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농어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농장·사회적 어업공동체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또는 지역 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등의 연계·협력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10	안 제16조(교류협력 및 농어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과 도시,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 농업과 타 산업간 교류협력을 촉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및 단체의 농어촌 재능나눔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교류협력 및 농어촌 재능나눔활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3항)	
11	안 제17조(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12	안 제18조(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3	안 제19조(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의 해결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	•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4	안 제7조(실태조사)								
3	안 제6조(시·도 계획 및 시·군 계획의 수립)	—	• 미대상 — 계획 수립 주기가 안 제5조에 따른 정부의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과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참고하여 시·도 및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8조(농어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	• 제3호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어촌 지역 공동체 및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상담 수요 등의 자료가 부재하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 다만, 해양수산부는 향후 구체적인 교육훈련기관이 지정되면 해양수산부 산하 교육기관의 운영비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유사 사례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tr><td>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교육훈련기관(보조) (4135-350)</td><td>농촌 지역·특화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컨설팅 지원 등 (1개소)</td><td>528</td></tr></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사업개요	2025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교육훈련기관(보조) (4135-350)	농촌 지역·특화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컨설팅 지원 등 (1개소)	528
사업명	사업개요	2025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교육훈련기관(보조) (4135-350)	농촌 지역·특화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컨설팅 지원 등 (1개소)	528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9조(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	• 제3호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는 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 수요 등의 자료가 부재하고, 개정안에 따른 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유사 사례 (단위: 백만원) <table> <tr> <th>사업명</th> <th>사업개요</th> <th>2025</th> </tr> <tr> <td>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_농촌돌봄활동지원_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보조)(4135-350)</td> <td>농촌 지역에 부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 사회 서비스 제공(이미용, 반찬나눔 등)</td> <td>1,848</td> </tr> </table> * 1,848백만원 = 40개×66백만원×국비 7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사업개요	2025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_농촌돌봄활동지원_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보조)(4135-350)	농촌 지역에 부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 사회 서비스 제공(이미용, 반찬나눔 등)	1,848
사업명	사업개요		2025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_농촌돌봄활동지원_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보조)(4135-350)	농촌 지역에 부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 사회 서비스 제공(이미용, 반찬나눔 등)	1,848							
7	안 제10조(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례를 참고하면, 안 제9조의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 예산이 안 제10조의 사후관리까지 포함하고 있음							
8	안 제12조(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	• 제3호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는 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지원 수요,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도 현재 유사 사업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9	안 제15조(사회적 농장 등에 대한 지원)	×	• 제3호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는 사회적 어업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 개선 지원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유사 사례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tr><td>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_농촌돌봄활동지원_농촌돌봄농장(보조)(4135-350)</td><td>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td><td>3,465</td></tr><tr><td>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_거점농장(보조)(4135-350)</td><td>사회적농업확산을 위한 사회적 농업 활동조직 자문,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회적 농장 현황 점검 등</td><td>840</td></tr></table> * 농촌돌봄농장(3,465백만원)=90개소×55백만원×국비 70% ** 거점농장(840백만원)=8개소×150백만원×국비 7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사업개요	2025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_농촌돌봄활동지원_농촌돌봄농장(보조)(4135-350)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3,465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_거점농장(보조)(4135-350)	사회적농업확산을 위한 사회적 농업 활동조직 자문,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회적 농장 현황 점검 등	840
사업명	사업개요	2025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_농촌돌봄활동지원_농촌돌봄농장(보조)(4135-350)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3,465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_거점농장(보조)(4135-350)	사회적농업확산을 위한 사회적 농업 활동조직 자문,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회적 농장 현황 점검 등	840										
10	안 제16조(교류협력 및 농어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	• 제3호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는 어촌 재능나눔활동에 대한 지원계획,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유사 사례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tr><td>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_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보조)(4135-350)</td><td>농촌지역에 개인·단체가 가진 지식·경험·기술 등의 다양한 재능을 나눔으로써 농촌주민 삶의 질 제고</td><td>1,873</td></tr></table> * 1,873백만원 = 사업비 80개소×20백만원×국비 90% + 운영비 1개소×433백만원×국비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사업개요	2025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_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보조)(4135-350)	농촌지역에 개인·단체가 가진 지식·경험·기술 등의 다양한 재능을 나눔으로써 농촌주민 삶의 질 제고	1,873			
사업명	사업개요	2025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_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보조)(4135-350)	농촌지역에 개인·단체가 가진 지식·경험·기술 등의 다양한 재능을 나눔으로써 농촌주민 삶의 질 제고	1,873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1	안 제17조(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	• 제3호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는 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유사 사례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tr><td>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_전국지원기관(보조) (4135-350)</td><td>농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사회적 농장 등 실천조직 육성 지원 서비스 활성화 연계방안 마련 및 홍보 추진 등</td><td>980</td></tr></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사업개요	2025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_전국지원기관(보조) (4135-350)	농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사회적 농장 등 실천조직 육성 지원 서비스 활성화 연계방안 마련 및 홍보 추진 등	980
사업명	사업개요	2025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_전국지원기관(보조) (4135-350)	농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사회적 농장 등 실천조직 육성 지원 서비스 활성화 연계방안 마련 및 홍보 추진 등	980							
12	안 제18조(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	• 제3호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설치·운영 및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지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설치·운영·지정·지원 여부 및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3	안 제19조(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직 법 시행 초기인 관계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설치·운영 및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지정·지원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2023년 8월 제정되어 2024년 8월부터 시행 중인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적용 범위를 어촌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본 추계에서는 적용 범위 확대에 의한 해양수산부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확대 계획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확대는 현행법에 따른 것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법 적용 범위에 어촌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정함
- 본 추계에서는 현재 관련 사업을 실시 중이거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5조의 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안 제7조의 실태조사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함
 - 개정안은 정부가 3년마다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경우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 중 첫째 및 이후 3년째 되는 해에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 개정안이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농촌 지역에서 어촌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를 참고하면, 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억 4,000만원(연평균 6,800만원)으로 추계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농림축산식품부, 2025.2.~2025.12, 170백만원)
 - 이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행법에 따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안 제7조에 따른 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170	-	-	170	-	340	68

주: 정부의 유사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 추진 방식 및 용역 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해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